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신안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3일(화) 11시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면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면
3.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훈의원 외 4인 발의) 4면
4.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면
5.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4면
6.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면

(11시03분 개의)

○의장 양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신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광호**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신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2월 18일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 있

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508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6%인 257억 58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47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61억 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 아직 미추진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전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국도비내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비가 부담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1시07분)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운영위원회 주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주윤덕**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

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주윤덕 의원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신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지급기준시기를 결정하여 본 위원회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월 의회의원 월정수당은 148만 원을 받고 있으나 개정하려는 2015년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금액은 군의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1.7%를 적용하여 150만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시기는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임기만료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기준 결정시기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4 (제240회-본회의 2차)

전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신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주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주윤덕 의원님께서 보고해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3.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훈의원 외 4인 발의)
 - 4.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6.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1분)
-

○의장 양영모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종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님의 네 분이 발의한 조례로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에 2013년 8월 준공된 3778m² 지상2층 지하1층 규모 40명 수용정원의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실추된 우리군 이미지 회복 및 인권침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생활시설 설치 운영과 주거 지원, 요양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한우리복지원 폐쇄로 인한 관내 장애인 보호관리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조례를 제정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목적과 기능, 입소대상자격, 비용부담, 시설의 위·수탁 절차 방법, 군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창녕군의 운영사례와 유사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문내용을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증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건은 최근 문화재 및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폐지추세에 발맞추어 증도 슬로시티 입장료 징수 및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슬로시티 증도 육성관리기금 조항을 폐지하고, 슬로시티추진위원회 운영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슬로시티 증도의 이미지 향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정해오던 지방보조금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조금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례를 신규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예산의 편성방법 및 절차,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방법, 보조금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절차, 신청자 구비서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한 지시사항을 이행코자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신규로 제정

6 (제240회-본회의 2차)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위에서 언급한 2013년 완공된 암해읍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을 능력 있는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임자 한우리복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등으로 임시시설로 긴급 분리 조치된 관내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확보가 시급한 만큼 동 시설을 조속히 개소 입소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 거주공간 확보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운영사례 및 투입비용 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양영모 의장님!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영모**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중도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신안군 장애인 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8일에 개회되었던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6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신안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길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군민의 갈증을 채워 주어야 하는 군의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하고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제7대 신안군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평행으로 몰고 가면서 원구성을 못하고 의원들 간의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린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연구모임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보완하고 고쳐나가면서 보다 활기찬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여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속한 후속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월동 및 취약지 안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8 (제240회-본회의 2차)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도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군의회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 의	장	양 영 모	
- 부	의	장	최 춘 옥
- 의	원	장 미 라	
- 의	원	주 윤 덕	
- 의	원	이 원 용	
- 의	원	이 종 주	
- 의	원	신 인 배	
- 의	원	정 광 호	
- 의	원	권 오 연	
- 의	원	조 영 훈	

○참석공무원(16명)

- 군	수	고 길 호		
- 부	군	수	송 경 일	
- 기	획	홍 보 실	장	정 영 섭

- 행정지원실장	김 성 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장 호
- 종합민원실장	이 종 순
- 해양수산과장	최 훈 인
- 문화관광과장	안 광 석
- 안전건설방재과장	박 종 원
- 도서개발과장	김 수희
- 천일염산업과장	윤 근 학
- 세무회계과장	황 광 연
- 농축진흥과장	강 을 원
- 기술보급과장	강 행 선
- 보건소장	서 정 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도 순

○의회사무과

- 사무과장	김 영 구
- 전문위원	김 종 오
- 전문위원	김 형 국
- 전문위원	김 대 길
- 의사담당당	전 일 권
- 통신담당당	최 성 은
- 속기사	김 소 영
- 속기사	장 미 옥